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폭력에 계엄상황 및 내란·외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포함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95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5. 7.
3. 회 부 일 : 2025.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내란 또는 외환과정에서 인권 침해 받은 사람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치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가폭력’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국가폭력등’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국가폭력”이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u>군 의문사</u>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1. ----- ----- ----- ----- ----- ----- ----- ----- <u>군 의문사,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중 대한 인권침해</u> ----- ----- ----- ----- --.
2. “국가폭력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략)	2. ----- ----- ----- ----.
<신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한 <u>중 대한 인권침해사건</u>

헌행법은 ‘국가폭력’을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망·고문·상해·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국가폭력과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사건”을 함께 ‘국가폭력등’으로 정의하고 있음.²⁾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광주와 제주에 치유센터가 설립되어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³⁾

1) 법 제2조제1호

2) 법 제2조제2호

3) 해당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2024.12.4.)로 해제되었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결정(2024.12.14.)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2025.4.4.)으로 파면되었음.

이는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포된 것으로, 이 사태를 접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음.⁴⁾

특히 군사독재 시절 계엄군의 행태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중장년층 이상에게 이번 계엄선포와 군병력의 투입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⁵⁾ 계엄을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층도 관찰학습 효과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집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⁶⁾

헌행법의 해석상 국가에 의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 또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 등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법령이 계엄이나 내란·외환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이들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트라우마 치유의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가폭력’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국가폭력 등’에 포함시켜 이들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트라우마 치유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명시하였음. 헌법재판소 2024헌나8, 2025.4.4.

5) BBC News 코리아, “‘역사를 되풀이할 셈인가요’ … 계엄령 사태가 불러일으킨 트라우마”, 2024.12.7.

6) 연합뉴스, “‘새벽에 일 터질까 잠 못 이뒀’…‘계엄 트라우마’도 확산”, 2024.12.10.

이를 통해 불법계엄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치유센터는 유공자증 확인, 진실화해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공식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기준 정립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봄.

《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 대상자 등록 체계 》

1차(준비)	2차(접수)	3차(확인 및 등록)
■ 치유 대상자 모집을 위해 유관기관* 안내 *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 ■ 관련 행사 시 이동형 부스에서 치유센터 안내	■ 대상자 신청서 상시 접수 ■ 등록을 위한 초기 면담 실시 ※ 피해사건 트라우마 중증 정도	■ <u>진화위 진상조사 보고서, 유공자증 등 확인</u> ■ 이용 대상자 등록 및 치유계획 수립

* 출처: 행정안전부

참고로 광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2025년 3월까지 기등록자 1,347명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심리상담을 진행한 바 있음.

《 12.3 계엄 관련 상담 현황(광주, '25.3월말 기준) 》

구 분	계	비대면(전화·화상)	대면(내원·방문)
인원(명)	239	146	93
상담횟수(건)	350	172	178

* 출처: 행정안전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불법적 계엄상황,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 제2조(정의)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미미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적 계엄·내란·외환 등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치유센터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유공자증 확인 등 공식적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계엄·내란·외환 피해자를 치유센터 이용 대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및 결정, 피해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록 등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1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개요

□ 주요 현황

- (추진배경) 국가폭력, 적대세력,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체계적인 치유를 위해 치유센터 설립
- (설립근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 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16번길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2층
규 모	대지 4,000㎡, 건물 2,200㎡ (직접 건립 수행, 107억원)	전용 458㎡ (임차)

- (기관성격)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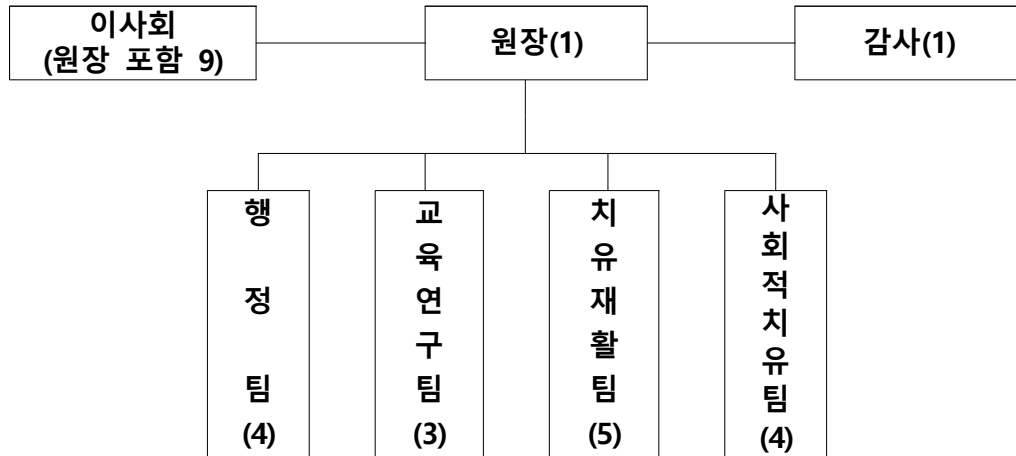
* 개별법(트라우마치유센터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법인으로 분류

□ 추진 경과

- 광주시 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 실시('12.~'15., 복지부 국비 50% 지원)
 - ※ 복지부에서 국비지원 중단으로 광주시 시비로 센터 운영('16.~'19.), 행안부 광주·제주 시범사업 시행 및 국비 50% 지원('20.~'24.5.)
- 행안부에서 치유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추진('18.7.~'19.1.)
- 건립부지 제안서 제출(광주시→행안부, '21.3.) 및 광주시로 선정('21.4.)
 - ※ 치유센터 설계 완료('22.12.) → 공사착공('23.1.) → 공사준공('24.3.)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법」 제정('21.12.7.)
- 제주도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설치 건의('22.10.)
- 치유센터 설립위원회에서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 동시 설치 의결('23.2.)
- 치유센터 원장 임명('24.2.26.), 본원 및 제주 분원 등기 완료('24.3.)
- 치유센터 개관 및 이용 안내 설명회 개최(광주 '24.5.10, 제주 '24.5.13.)
 - ※ 제주 설명회 분원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대안 마련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및 치유·재활 서비스 지원('24.7.1.~)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 (기구·정원) 13명(광주시 공무원 4명 별도 파견)



※ (시범 13) 센터장 1, 행정 3, 연구 2, 상담 6, 재활 1 → (센터 13) 원장1, 연구 3, 상담 7, 재활 2(파견 4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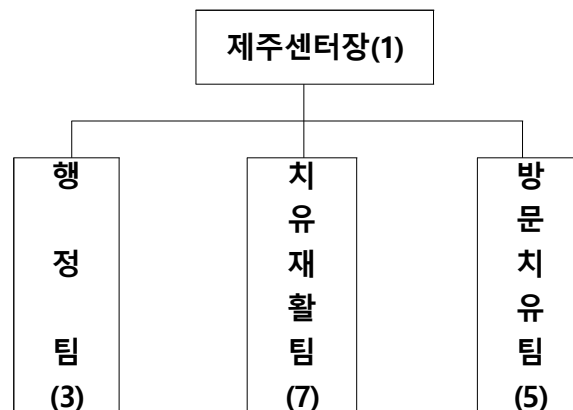
- (예산) '25년 예산 1,100.5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1,100.5백만원이 매칭되어야 하나, 지방비 본예산 미편성

- (주요 프로그램) 심리상담, 오월소나무 합창반, 난타 프로그램 등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 (기구·정원) 정원 13명(제주도 공무원 3명 별도 파견)



※ (시범 13) 센터장 1, 행정 4, 상담 6, 재활 2 → (센터 13) 센터장 1, 상담 10, 재활 2(파견 3 별도)

- (예산) '25년 예산 853.5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853.5백만원이 매칭되어야 하나 553.5백만원 매칭

- (주요 프로그램) 심리상담, 인형극테라피,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

참고2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등록회원 현황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단위:명 / '25.4월말 기준)

구분	합계	인원	세부인원	세부항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47	511	367	당사자
			128	(유)가족
			16	기타(직접 참여 및 직간접적 목격자)
5·18민주화운동 외 사건 관련자		836	3	조작간첩 사건
			8	군대 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37	민주화운동 관련자
			2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54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20	삼청교육대
			20	시민단체 활동가
			5	아람회 사건
			301	여순사건
			31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20	호남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5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1	사북항쟁 피해자			
18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27	납북귀환어부사건			

□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단위:명 / '25.4월말 기준)

구분	합계	인원	세부인원	세부항목
4·3사건 관련자	1,675	1,484	58	생존희생자
			1,333	(유)가족
			93	기타(직간접적 경험자 및 목격자)
강정마을 주민		186	186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관련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4	4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기타		1	1	6월항쟁 관련자